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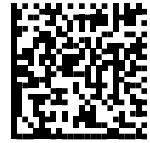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선행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 N.C. Gen. Stat. § 96-14( )에의거하여일,원고가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 )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 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부터원고는로서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3. 원고가(그의) (그녀의) (클레임을)  
 (주간인증을)제기한 방법은였습니다.원고는때문에이전에(그의) (그녀의) (클레임을)  
 (주간인증을)제기하기위해본부에연락하지않았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2

4. 원고는원고에게주어진노스캐롤라이나행정법및지시사항에명시된대로(전화로)  
 (인터넷으로)본부에연락(할수있었습니다)  
 (할수없었습니다).대안으로,원고는의이류로본부에우편,배달서비스,팩스,또는공공고용사  
 무소를통해연락을 (할수있었습니다) (할수없었습니다).

법의규정:

고용안전법은다음과같이규정합니다:

혜택을얻기위해서개인은실업혜택에대한유효한클레임을제출  
 하고직장에신청을해야한다.개인은제기된각클레임에대해 1  
 주간대기기간을거쳐야한다.유효한클레임은개인의기본기간  
 에대한본상세조항의고용및임금표준을충족시키는클레임이다  
 .두번째혜택연도에대한유효한클레임은이전혜택연도의시작  
 일이후및새로운혜택클레임제기일이전까지이상세조항의고용  
 및임금표준을충족시키는것이다.

N.C. Gen.Stat. §96-14.1(b).

혜택연도는개인이혜택을위해처음유효한클레임을제출하고직장신청을한주의첫날로시작  
 하는 52 주기간입니다.개인이급여명세서에포함된경우,혜택연도는급여명세서주가끝나는  
 날이전의일요일에혜택연도가시작됩니다.개인이급여명세서에포함되지않은경우,혜택연  
 도는개인이혜택을위해처음유효한클레임을제출하고직장신청을한달력기준주의일요일에  
 시작합니다. N.C. Gen. Stat. § 96-1(b)(5).

개인은혜택에대한유효한클레임을제출하기위해인터넷또는전화로본부에연락해야  
 합니다.04 N.C. Admin. Code 24B .0101(a).  
 본부규정은우편,배달서비스,팩스,또는악천후또는천재지변으로인해본부의대리인이클레  
 임또는주간인증을인터넷또는전화로받을수가없는특정조건이존재하는경우주전역의공공  
 고용사무소를통하는방법등,클레임또는주간인증을제출할수있는대체방법을제공합니다.  
 04 N.C. Admin. Code 24B .0102.

고용안전법은더나아가다음과같이규정합니다:

혜택에대한청구는본부가채택한규칙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고용주는실업수당보상프로그램에관한정보에엑세스할수있는  
 서비스를개인들에게제공해야한다.본부는모든인쇄된진술및  
 고용주가고용주에게비용이들지않고개인에게제공하도록본부  
 에서요구하는기타자료들을고용주에게제공해야한다.

N.C. Gen. Stat. § 96-15(a).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3

본부의대리인이클레임을조사하고유효하다고결정한후,혜택시작시기,지급할주당급여금액,및잠재적최대혜택기간과관련한주를나타내는금전적결정이내려져야합니다.N.C. Gen. Stat. § 96-

15(b)(1).이법은또한원고가다음의이유로클레임을시기에맞춰제출하지못한경우,원고가클레임을제출했어야할달력기준주중일요일로유효한최초클레임이소급적용됩니다.

- (1) 게시되었어야할혜택클레임제출시간및장소에대한통지가원고의고용설립에게시되어있지않은경우;
- (2) 원고의고용주가원고에게혜택클레임을제출하지말것을강요하였고,원고는고용안전부의권한을위임받은대리인에게근로마지막날로부터14일이내에연락을한경우;
- (3) 자연재해로인한경우;또는
- (4) 무효한클레임이선의로다른주에서제출된경우.

04 N.C. Admin. Code 24B .0105.

고용안전법에사용된바와같이,정당한사유는실사를시행함에있어법으로요구되는행위를하지못한것에대한합법적인변명이되어야합니다. 04 N.C. Admin. 24A .0105(26).

법의결론:

현재의경우에,아래서명자는적합하고믿을만한증거및발견된사실들을통해원고는의이류로(클레임음) (주간인증을)이전에제출하지못했다고결론내립니다.아래서명자는더나아가원고가일에제출을한사유는일이전에제출하지못한것에대한합법적인변명이되는실질적사유(라고)(가아니라고)결론내립니다.그러하여,원고는정당한사유를(보여주었습니다)(보여주지못하였습니다).

앞서언급한내용대로,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어야/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합니다.더나아가,원고의(그의)(그녀의)클레임선행에대한요청은(허락되어야)(허락되지않아야)하며,원고는실업급여혜택수혜에대해(자격이있습니다)(자격이없습니다).

결정: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의(그의) (그녀의)클레임선행에대한요청은(허락되어야) (허락되지않아야)합니다.

로끝나는주들에,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해(자격이있습니다)  
(자격이없습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5 페이지중 4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http://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카운티의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가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5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